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 ○○아파트 신축공사장(소음·비산먼지) 피해 민원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훈계대상자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7. 7. 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비산먼지 피해 민원과 관련한 실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민원심사관(민원실장 등)은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

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구 ○○○○과에서는 ○구 ○○동 000번지 일원에 ○○아파트(183,303,996㎡/ 1,180세대 / 11동 지하3층 지상28~32층) 건축을 ○○○건설에게 허가(감리 ○○○○엔지니어링) 하였으며, 2015. 11월 착공, 2018.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그런데 동 아파트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대책추진 위원회(위원장 ○○○) 72명이 소음·비산먼지 등의 피해보상, 공사장 지도점검 등의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2017. 7. 30. 울산광역시 ○○○○과가 접수하여 ○구 ○○○○과로 이첩 조치하였다.

동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하면서 ○구 ○○○○과에서는 2017. 7. 31. ○구 ○○○○과에 재 이첩 조치하였으며 ○○○○과에서는 2017. 8. 4. 부구청장 대결로 내부결재 하였다.

동 다수인 민원은 2015년 12월 공사 착공 시작부터 소음·먼지 발생 민원이

발생되어 2016. 8. 7. 소음측정(79.3 dA) 지적, 2016. 9. 24. 소음측정(69 dA) 지적 등 기준초과 4회로 조치이행명령 3회, 발생행위중지명령 1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6. 10. 15. ~ 10. 18. 생활피해 항의 및 보상촉구 집단지회(주민 195명 참가)를 하였고, 이후 2017. 1. 12. ~ 7. 19.까지 총 7차에 걸쳐 ○○○○ ○과 ○○아파트 주민대표간에 소음저감대책회의 및 피해보상금액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보상금액을 제시하였고 2017. 12. 22. 보상금 7,500만원을 수용결정하고 현재 70% 상당 주민동의를 받는 등 3월중 지급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동 다수인관련민원 보고서(2017. 8. 4. / 부구청장 대결) 확인결과 및 조치 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에게는 사업장에 소음·먼지 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였음을 설명하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피해 구제토록 안내하겠으며 서면으로 회신 하고, 주 1회 이상 공사장 순찰을 강화(소음발생시 즉시 측정)”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동 내용을 민원대표에게 회신하였다.

그러나 민원회신일인 2017. 8. 4. 당일에도 “거푸집 해체 소음으로 야간 근무 후 잠을 잘 수가 없다” “21시가 넘어 인부한명이 벽돌 싣기 작업을 하는데 못하도록 해 달라” “단지 안에 브레이크 소음으로 미치겠다.” “교대근무자인데 브레이크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 등 4건의 전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건설(주) 민원부장에게 소음저감토록 행정지도하였다고 4건 모두 ‘현지계도’ 하였다고 민원종결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2017. 12. 20.까지 1일 1회서 수회의 전화 민원 등이 접수(총 75건)되었으나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동 다수인관련 민원은 2017. 8. 4. 보고서 내용과 같이 소음 등 민원발생 시에는 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소음 발생 시는 즉시 측정하겠다고 보고하

였으나 민원접수 시 일반민원처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음측정 및 행정조치 내용이 ‘현지계도’만 하였다고 적시하고 출장복명서 작성 보고 및 다수인민원관련 민원으로 기관장보고(월보 작성) 및 관리도 하지 않았다.

특히 2017. 8. 16. 인터넷민원에 따르면 “광복절 아침 6시부터 소음, 주말에도 소음 측정해 달라, 동영상보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2017. 9. 7. 전화민원에는 “○○건설 공사소음 현장 지도해 달라고 하고 소음기를 달아 달라고 함, 소음측정 요청”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소음저감 행정지도 및 현장 방문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치 못했으나 행정지도’함으로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등 직접적인 소음요청 건에 대하여도 소음측정 없이 업무를 소홀히 조치하였고

그리고 비산먼지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2017. 11. 29. 전화민원에 따르면 “소음 및 먼지가 심하여 물을 뿌려주면 좋겠다.”고 되어 있고, 2017. 12. 19. 인터넷민원에는 “인근 현장에서 비산먼지조치가 안 되고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다음날인 2017. 12. 20. 전화민원에는 “새까만 돌 같은 게 포장 후에도 방치돼서 먼지가 많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수차례의 민원에 대하여도 모두 ‘현지계도’라고 일시적 단순 민원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위와 같이 동 민원은 소음·비산먼지 등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써 민원접수일 이후에도 야간 및 새벽시간대 작업 등에 따른 공사장 소음에 대한 민원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모두다 ‘현지계도’ 하였다고 민원종결 처리하였으며, 주민피해가 밤과 낮으로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당사자 간(주민대표와 ○○○건설)의 합의 사항이라며 최소한 협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내보 보고도 없이

소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인 2018. 3. 8.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구와 함께 불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5명)에 따르면 현재 공정은 73.3%로써 주요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외장재와 내장재 공사 중에 있고 건물 중 1동에 낙하물방지망이 훼손되었음에도 방치하는 등(6건, [붙임] 참조) 공사장 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의 소지가 지속되고 있는 바,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와 수시(주 1회이상)로 공사장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다수인관련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시어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회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사항 사진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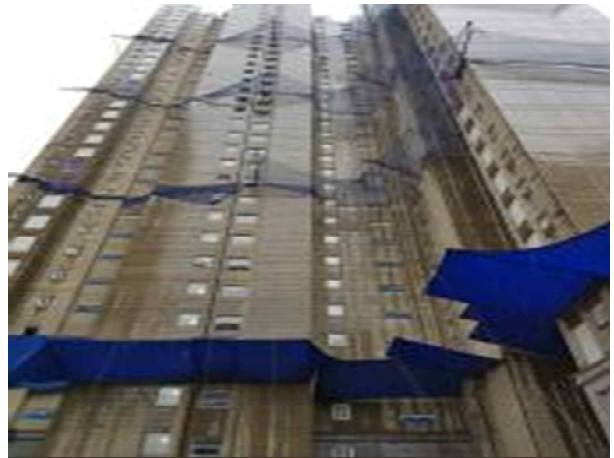
전 : 폐기물 보관소 덮개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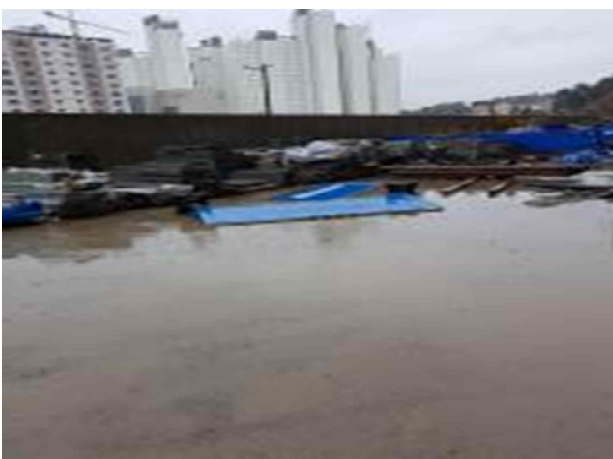
후 : 덮개 설치(즉시 조치)



공사장 내 배수 불량



낙하물 방지망 관리 미흡



자재 적치장 관리 미흡



1층 개구부 안전난간 고정 불량